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및 지침안 목록

조례안 및 지침안	발의의원	비고
1.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명노봉 의원	
2.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	
3.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기애 의원	
	<공동발의>	
	이기애 의원	
	김희영 의원	
	안정근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	
	김미성 의원	
	천철호 의원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홍순철 의원	
	맹의석 의원	
김은아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전남수 의원		
김미영 의원		
신미진 의원		

조례안 및 지침안	발의의원	비고
4.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대표발의> 이기애 의원 <공동발의> 이기애 의원 김희영 의원 안정근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 김미성 의원 천철호 의원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홍순철 의원 맹의석 의원 김은아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전남수 의원 김미영 의원 신미진 의원	
5.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미진 의원	
6.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김미영 의원 윤원준 의원	
7.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명노봉 의원 홍성표 의원 홍순철 의원	
8.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노봉 의원	
9.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명노봉 의원	
10.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윤원준 의원	
11.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	
12.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김은아 의원	
13.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	
14.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	

※ 조례안 및 지침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asansicouncil@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